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43
----------	------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추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나. 평생교육진흥원을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안 제5조의3)

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를 신설함(안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11. 21. ~ 12. 11.)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송계수 (☎2133-396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평생교육진흥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민”을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관에 속하는”을 “소관의”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5조의3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 ④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제1항제3호 중 “관련기관간”을 “관련기관 간”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대상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사람()	
	주소		
	휴대전화 번호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 사항	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6. 가족관계등록부 7.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8.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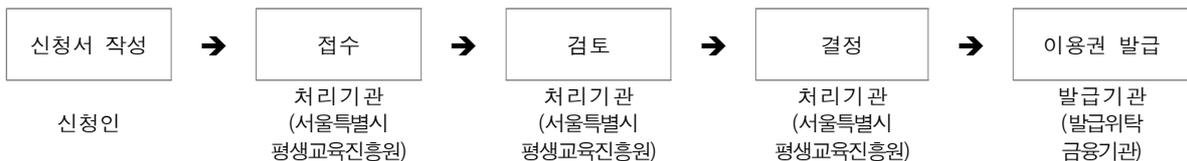
작성방법

-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 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등록 장애인 여부 여 [], 부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장애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그 외 ※ 해당되는 사항은 전부 체크	
	주소		
	휴대전화 번호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수료
담당자 확인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등록장애인 확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5.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7. 가족관계등록부 8.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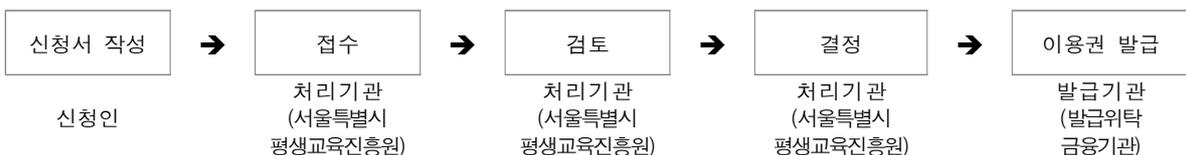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 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집 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휴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회원 계정정보(ID,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회원가입동의 여부, 평생학습계좌번호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계좌 발급 및 학습이력관리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관리	5년, 회원탈퇴 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학습이력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은 제한을 받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주민센터 포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급위탁금 융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 이용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한도금액 부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핸드폰(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수집 및 제3자 제공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차기 제3자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자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주민센터 포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급위탁금 융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이라는 긴급한 재산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며, 위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의 진흥 및 <u>평생교육 시행계획</u>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p> <p>3. ~ 5. (생 략)</p> <p>제3조(평생교육진흥 책무) ① 시장은 모든 <u>시민</u>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 <u>소관에 속하는</u>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u> ----- ----- ----- -----.</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u>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u> ----- ----- -----.</p> <p>② ----- <u>소관의</u> ----- ----- ----- -----.</p> <p><u>제5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u> ① 시장은 <u>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u></p>

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5조의3에 따른 전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④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2. (생략)
- 3. 평생교육 관련기관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4. ~ 6. (생략)
- ② (생략)

제5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 3. ----- 관련기관 간-----
-
- 4.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 5. (생략)

④·⑤ (생략)

제13조(회의) ① 삭제

②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31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신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의회 -----

2. ~ 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②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

----- 담당 공무원 -----

-----.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국적이 다른 모든 항목은 신청인이 작성하며, []에는 해당되는 경우 []호를 표시(다중응답 가능)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0일 이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무 [] <small>※ 신청일 전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의 아닐 경우, 적용받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small>		
	구분 [] 장애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그 외 <small>※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체크</small>		
	주소		
	휴대전화 번호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문자수령주소 [] 문자수령 수신동의			
통지방법 [] 서면 [] 문자메시지 [] 문자수령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가명 혹은 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접수사유	기타용 발급	수수료 없음
210x297(복합기 30g/m ²) 혹은 등질기(80g/m ²) (양쪽 등 2쪽)		

신청인 직접서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법」 제16조의2(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발급)를 적용한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2. 국민연금, 건강·가족 등 각종 증명서 3. 신청서 작성방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 신청방법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교육 이수 여부 확인 4. 장애인복지법, 이 관련 장애인복지법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수수료 없음
신청인 특위 서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법」 제16조의2(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발급)를 적용한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2.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3.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4.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5.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6.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7.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8.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9.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발급정보: 증명이용 동의서
 본인 또는 대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가명 혹은 본)

작성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작성: 「평생교육법」 제16조의2(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발급)를 적용한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2.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3.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4.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유용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법」 제16조의2(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발급)를 적용한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2.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3.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4. 「장애인복지법」 제24조(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210x297(복합기 30g/m²) 혹은 등질기(80g/m²)

[별지 제2호서식]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4,645,274	4,645,274	4,645,274	4,645,274	4,645,274	23,226,370
시비	지방세수입	597,250	597,250	597,250	597,250	597,250	2,986,25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자치구비)	1,393,582	1,393,582	1,393,582	1,393,582	1,393,582	6,967,910
	합계	6,636,106	6,636,106	6,636,106	6,636,106	6,636,106	33,180,53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평생교육정책팀장 우효정
 담당자 송계수(02-2133-3964, ks8934@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예산 : 6,636,106천원 (교육부 기준)

(국비 4,645,274천원, 시비 597,250천원, 구비 1,393,582천원)

- 지원금 산식 : 지원인원 1인당 35만원×21,067명×소진율 90%(교육부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지원인원	사업비 총계	국비 (70%)	시비 (9%)	구비 (21%)
			총계	21,067	6,635
평생교육이용권	19,294	6,077	4,254	547	1,276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1,773	558	391	50	117